

1.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19백만 원**(100만 원 × 519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나의 정보조회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
 -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19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 벅스코리아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디지털 인재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252백만 원(200만 원 × 63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IT 및 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
 - ※ 신청자 학과명에 'IT, 컴퓨터, 전자, 보안, AI, 데이터, 게임, 콘텐츠'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위 단어 불포함 학과는 기부처에서 관련학과 여부 심사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총 63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10점)
 - *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입상경력당 5점 가산(최대 10점, 기부처 최종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
 - ※ 입상경력 있는 경우만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3. 말남장학금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백만 원(200만 원 × 1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3년도 1학기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예정)자 * 서울, 경기, 인천
- 성적기준: 없음 ※ 신입생 선발
- 지원인원: 1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자기소개서(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는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1. 사업 목적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8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①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 ② ①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참고1)
 -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참고2)
 -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
 -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 장학금 신청자와 사무금융분야 종사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 ('23년도 1학기 기준)

기관명	코드
건설공제조합	011
ABL생명보험	012
AIA생명보험	013
AXA손해보험	014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015
CMA CGM Kore	016
DGB생명보험	017
DH저축은행	018
HMM	019
HSBC은행	020
IBK신용정보	021
IBK연금보험	022
IBK저축은행	023
IBK캐피탈	024
JT저축은행	025
JT친애저축은행	026
JT캐피탈	027
KB국민카드	028
KB손해보험	029
KB손해사정	030
KB신용정보	031
KB증권	032
KB캐피탈	033
KB손보CNS	034
KCA손해사정	035
KDB생명보험	036
KDB캐피탈	037
KG모빌리언스	038
KIS정보통신	039
KSNET	040
MG손해보험	041
NH-Amundi자산운용	042
NH농협중앙회	043
NH농협캐피탈	044
NH투자증권	045
OK금융그룹	046
PCA생명보험	047
SAP코리아	048
SGI신용정보	049
SK매직	050
SK증권	051
공공상생연대기금	052
교보생명보험	053
교보증권	054
금융감독원	055

기관명	코드
금융보안원	056
농협하나로유통	057
대구은행	058
대상정보기술지부	059
대신증권	060
대한건설협회	061
더케이손해보험	062
더케이저축은행	063
동양네트웍스	064
동양생명보험	065
롯데카드	066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067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068
메이슨참조	069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70
미래신용정보	071
미래에셋생명보험	072
보험개발원	073
보험연수원	074
부산에큐온저축은행	075
비씨카드	076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077
삼성증권	078
삼일회계법인	079
상상인증권	080
생명보험협회	081
서민금융진흥원	082
서울보증보험	083
서울시태권도협회	084
신용보증재단(강원)	085
신용보증재단(경기)	086
신용보증재단(경북)	087
신용보증재단(서울)	088
신용보증재단(서울희망)	089
소방산업공제조합	090
소프트웨어공제조합	091
손해보험협회	092
전북신용보증재단	093
신용회복위원회	094
신한금융투자	095
신한생명보험	096
신한신용정보	097
신한아이타스	098
신한카드	099
아주캐피탈	100

기관명	코드
에듀온저축은행	101
에듀온캐피탈	102
에이스손해보험	103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104
에이앤디신용정보	105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06
예금보험공사	107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8
이크레더블	109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110
저축은행중앙회	111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12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13
전국사무원대	114
전국새마을금고	115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16
전국택시공제조합	117
전국협동조합	118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19
처브라이프생명보험	120
케이프투자증권	121
코리아리저보험	122
코스콤	123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24
통조림가공수협	125
티머니	126
푸본현대생명보험	127
하나FNI	128
하나금융투자	129
하나생명보험	130
하나외환카드	131
하이투자증권	132
한국HP	133
한국HSBC	134
한국SGS그룹	135
한국거래소	13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37
한국교직원공제회	138
한국금융투자협회	139
한국기업평가	140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41
한국대부금융협회	142
한국렌탈	143

기관명	코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44
한국마스크사부	145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46
한국싸스소프트웨어	147
한국시티은행	148
한국신용정보	149
한국신용카드결제	150
한국신용평가	151
한국신용평가정보	152
한국씨티은행	153
한국약학교육협의회	154
한국예탁결제원	155
한국오라클	156
한국은행	15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58
한국자산평가	159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60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61
한국증권금융	162
한국투자증권	163
한국해양진흥공사	164
한국화재보험협회	165
한화생명보험	166
한화손해보험	167
한화손해사정	168
현대상선	169
현대차증권	170
현대캐피탈	171
현대커머셜	172
현대해상화재보험	173
현대해상화재보험	174
협동조합 강원본부	175
협동조합 경인본부	176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77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178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179
협동조합 서울본부	180
협동조합 제주본부	181
협동조합 충북본부	182
협동조합 호남본부	183
협동조합 협동조합	184
홍국생명보험	184
홍국저축은행	185
홍국화재해상보험	186

기관명	코드	
광주 전남	무안농협	187
	운남농협	188
	청계농협	189
	일로농협	190
	함평농협	191
	천지농협	192
	선진농협	193
	진도농협	194
	서진도농협	195
	황산농협	196
	화원농협	197
	산이농협	198
	옥천농협	199
	여수농협	200
	여수원예농협	201
	광주원예농협	202
	나주배원예농협	203
	신안농협	204
	광양농협	205
	광양원예농협	206
대전 충남	서부농협	207
	서대전농협	208
	대전원예농협	209
	남대전농협	210
	충절로신협	211
부산 울산 경남	둔산신협	212
	금정농협	213
	기장농협	214
	남부산농협	215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16
	동래농협	217
	해운대수협	218
	거제수협	219
	장승포농협	220
	전주농협	221
전북	삼례농협	222
	대포수협	223

*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역

서울	공덕	258
	서울동부	259
인천	서인천	260
	남부	261
대구	성북	262
	송내	263
경기	성지 성남중부주례	264
	성남중부	265
	주례	266
세종충남	합동	267
	중부	268
전북	반여2.3동	269
	해운대중앙	270
	남부중앙	271
	대연중앙	272
	사직3동	273
부산	사직1동	274
	구서2동	275
	금정	276
	채송동	277
	주례	278
	연산계월	279
	연계중앙	280
	연산6동	281
	부전1동	282
	거제4동	283
	연산로터리	284
	가야1동	285
	부산대병원	286
	연산3동	287
연지	288	
태종대	289	

6. 우미희망재단

1. 사업 목적

-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00백만 원
 - 생활비 장학금: 2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2개 학기)
 - 꿈이름 장학금: 50백만 원(100만 원 × 50명 × 1개 학기('23-1학기))
 - 인재육성 프로그램: 50백만 원(총 2회 이내 개최)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 장해판정(1~14급)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산정 가구원 포함 불필요)
 -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총 2회)
 - ※ '23년 5월 중 1일, 8월 중 1박 2일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 ※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꿈 이름 장학금 100만 원 지원('23-1학기 정액 지원)

-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진로·비전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세부사항 [참고1] 자료 참조)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 * 건설 관련 산재일 경우 가산점 부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 소속 사업장의 업종(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사업장 조회 결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부처 최종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산업재해사망자 자녀 > 산업재해 장해등급 고등급자(1급→14급 순) > 산업재해 근로자가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계속장학생 선정기준
 - '23-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5월, 8월 예정) 및 꿈 이름 중간 보고서 제출
 - ※ 코로나19 확진 등 질병이나 사고, 채용 관련 면접 일정 등으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참석 인정 여부 기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 계속장학생 선정기준 미충족 시 '23-2학기 계속장학생 탈락
- 작성서류
 - 자기소개서(꿈 이름 계획서)
 - ※ [참고2]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
- 제출서류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꿈 이름 보고서
 - 중간 보고서('23. 7. 31.까지 제출), 결과 보고서('23. 10. 31.까지 제출)
 - ※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만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1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계획(안)

1. 목적

- '23-1학기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업재해 가정 대학생들의 진로·비전 탐색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개최 계획

개 요

- 주제: “푸른등대와 함께 그리는 나의 미래”
- 일정: 2023년 5월, 8월 중 1회씩 총 2회 이내 개최 예정
- 장소: 프로그램 개최에 적합한 장소 선정
- 사업예산: 총 5천만 원(2회 이내 개최)

주요 프로그램(안)

- 진로·비전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미래 설계 프로그램
- 자아존중감 향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활동
-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 등)

참고2

자기소개서(꿈 이룸 계획서)

○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

<p>1. 2023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p> <p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2023년 12월 결과 보고 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토익 800점 달성,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학기 성적 4.5점 만점 달성 등</p>
<p>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500자 이내)</p> <p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p>
<p>3. 꿈 이룸 장학금(100만 원) 사용 계획(500자 이내)</p> <p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예시) ○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5만 원 x 4권) ○ 시험 응시료 10만 원(5만 원 x 2회) ○ 인터넷 강의로 30만 원 ○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p>

7. 유지웅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해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8.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총 70백만 원(250만 원 × 28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 푸른등대 KOSAF 기부펀드 유형 I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8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9. 한국가스공사

1. 사업 목적

- 에너지 전공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8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에너지 전공자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에너지 전공자 기준: 신청자 학과명에 '에너지, 기계, 전기, 화학공학(화공), 토목, 건축, 전산, 자원, 지질' 단어가 포함된 자
 -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8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10점)
 - 동점자 처리기준: 주거시설이 월세, 하숙집, 고시원인 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연소자
 - * 주거시설이 월세, 하숙집, 고시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신청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권역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선발인원(명)
대경권, 강원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16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16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16
호남권, 제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16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6
합 계		80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참고 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 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____ 월 ____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참고 3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입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소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입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4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주 확인서

성명		학교명	
호실	관호	연락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10. 한국전력공사

1. 사업 목적

- 전기공학·에너지 전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8백만 원(200만 원 × 27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단, 국내 4년제 대학의 4학년 이상은 제외)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
 - 학과명 포함 단어: 전기, 에너지
 -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7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 (2차) 생활환경(50점)* + 경진대회 입상경력(10점)**
-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각 항목 당 10점 부여)
- ** 상장 및 관련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최우수상·금상(대상) 10점, 우수상·은상 5점, 기타 입상 3점) (기부처 최종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사회배려 대상자(생활환경) > 경진대회 입상경력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선택)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의 경우(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상장 및 관련 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1.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2백만 원(200만 원 × 5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 ①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1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계약자가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2. 한국투자공사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 외 보호 출신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자기소개서(30점) + 가산점*(5점)**
 - * 장애인 또는 미혼모·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소자
- 제출서류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필수제출서류, 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채용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13.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 I)

1. 사업 목적

-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7백만 원(100만 원 × 47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 전공자
 -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47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교: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 II)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0백만 원(100만 원 × 4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①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 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시 해당 회사의 재직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 장학금 신청자가 택배기사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 III)

1. 사업 목적

- 소비자학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0백만 원(100만 원 × 3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소비자학* 전공자
 - * 신청자 학과명에 '소비자'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3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6. KDB나눔재단

1. 사업 목적

- 취업 준비생·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75백만 원(250만 원 × 35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신청자격: 선발 분야별(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 *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23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 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진행 방식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발 분야	일반 분야(27명)	특기 분야(8명)
선발 자격 (공통)	○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정, 다문화 가정	
전공 분야	○ 전공 제한 없음	○ 예체능 계열 전공자* *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23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35명(일반분야: 27명, 특기분야: 8명)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분야별 선발)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3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생활환경(5점)*
 -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한부모가정, 학생가정,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항목 점수 5점)

구분	1차 선발 인원	2차 최종 선발 인원*
일반 분야	81명 (3배수)	27명
특기 분야	24명 (3배수)	8명
합계	105명	35명

- *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의 경우(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자기소개서
----	-------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17. KOSAF기부펀드(유형 II)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KOSAF기부펀드II유형 기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단, 신청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 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____ 월 ____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참고 2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대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붙임1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없음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넥슨코리아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 								
3. 말남장학금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4.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5.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특별재난지역 및 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경북·강원 산발</th> <th>중부권 집중호우</th> <th>태풍 '힌남노'</th> </tr> </thead> <tbody> <tr> <td>재난 기간</td> <td>'22.3월</td> <td>'22.8월</td> <td>'22.9월</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피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경북·강원 산발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재난 기간	'22.3월	'22.8월	'22.9월
구분	경북·강원 산발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재난 기간	'22.3월	'22.8월	'22.9월							
6. 우미희망재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제출)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기부처	제출서류	
7. 유지웅 기부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	
8.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9. 한국가스공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월)세 주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기숙사 주거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기부처	제출서류	
10. 한국전력공사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탈북 가정(새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정 외 보호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학생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다문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상장 및 관련 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2. 한국투자공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모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부처	제출서류
13.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	• 제출서류 없음
14.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I	• 제출서류 없음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5.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II	• 제출서류 없음
16. KDB나눔재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 (택1)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기부처	제출서류
17. KOSAF기부펀드 유형 II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주거 형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주거유형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유형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2022. 12. 17.)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2022. 12. 17.)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참조 **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절차**

절차 ① **장학금 신청화면(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신,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신청서에 필요한
능력 및 사실 아닌 내용 입력으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증서 동의 > 취소

절차 ② **신청서 작성(개별서류 제출)**

개별서류 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주요등록비(중복)서류제출 >**

기타서류 [미등록] 찾아보기... 파일업로드

※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푸른대학 기부장학금 개별서류 제출방법>

1. 개별서류 확인하기에서 선택한 기부처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제출서류는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 선택 후 파일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됩니다.
3.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10MB 이내만 가능하며, PDF, ZIP, JPG, HWP 파일 형태로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파일의 이름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바뀝니다.
4. 등록된 파일은 [파일등록완료]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소속 확인 서류 제출방법>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차상위 증명서 등은 푸른대학기부장학금 신청 완료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부학자금 통합신청 시 소속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여של 필요가 없습니다.

< 이전 > < 확인 > 취소

붙임2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우미희망재단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

1. 2023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2023년 12월 결과 보고 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토익 800점 달성,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학기 성적 4.5점 만점 달성 등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500자 이내)

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꿈 이룸 장학금(100만 원) 사용 계획(500자 이내)

(예시)

 -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5만 원 x 4권)
 - 시험 응시료 10만 원(5만 원 x 2회)
 - 인터넷 강의로 30만 원
 -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

한국투자공사

○ 평가기준

항목	진술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KDB나눔재단

○ 평가기준

항목	진술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말남장학금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붙임3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2. 12.

인 재 육 성 장 학 부



'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사항

I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2. 12. 16.(금) ~ 12. 26.(월)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2. 12. 17.(토) 00:00 ~ '22. 12. 26.(월) 18:00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2. 12. 27.(화) ~ '23. 2. 23.(목)
장학생 심사	'23. 2. 24.(금) ~ 3월 말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3. 3월 말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2월 24일(금))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4. '23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인원	장학금액(학기당)	전체예산('23-1예산)	지원기간
생활비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19	1	519(519)	1개 학기('23-1)
	2. 넥스코리아	新 IT·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	63	2	252(126)	2개 학기('23-1~2)
	3. 말남장학금	취경여고 졸업생	10	2	20(20)	1개 학기('23-1)
	4. 사무금융유부단체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40	2	80(80)	1개 학기('23-1)
	5.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新 자연재난 피해 가정의 대학생	53	2	212(106)	2개 학기('23-1~2)
	6. 우미희망재단	新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	50	(1학기) 3 (2학기) 2	250(150)	2개 학기('23-1~2)
	7. 유지용 기부장학금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5	2	10(10)	1개 학기('23-1)
	8. 정인옥 학술장학재단	新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28	2.5	70(70)	1개 학기('23-1)
	9. 한국가공공사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전공 대학생	80	2	160(160)	1개 학기('23-1)
	10. 한국전력공사	전기, 에너지 전공 대학생	27	2	108(54)	2개 학기('23-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1	2	102(102)	1개 학기('23-1)
	12. 한국투자공사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신입생	20	2.5	100(50)	2개 학기('23-1~2)
	13.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 I	방송 전공 대학생	47	1	47(47)	1개 학기('23-1)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 II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40	1	40(40)	1개 학기('23-1)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 III	소비자학 전공 대학생	30	1	30(30)	1개 학기('23-1)
	16. KDB나눔재단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 단 특기분야는 예체능 전공자	35	2.5	175(87.5)	2개 학기('23-1~2)
	17. KOSAF기부펀드 유형 II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20	1.5	30(30)	1개 학기('23-1)
합 계			1,118	-	2,205(1,681.5)	

II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2. 12. 17.(토) 00:00 ~ '22. 12. 26.(월) 18:00까지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 진행**

□ 정보 제공방식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금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 'N' 입력)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단, 기초/차상위/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처에 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times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times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times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22-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중 국고금관리법 제47조2항에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가능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반환 제외자는 반환 제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장학사업 신청 불가

7. 자기소개서 심사

심사위원 위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 위촉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기능

-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임기

-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선발기준 우선순위

-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발생이자 처리

-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7	54	51	48	45	42	39	3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실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점수	40	상위 5%미만	38	5%이상 10%미만	36	10%이상 15%미만	34	15%이상 20%미만	32	20%이상 25%미만	30
점수	20	50%이상 55%미만	18	60%이상 65%미만	16	70%이상 75%미만	14	80%이상 85%미만	12	90%이상 95%미만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실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점수	50	상위 5%미만	47.5	5%이상 10%미만	45	10%이상 15%미만	42.5	15%이상 20%미만	40	20%이상 25%미만	37.5
점수	25	50%이상 55%미만	22.5	60%이상 65%미만	20	70%이상 75%미만	17.5	80%이상 85%미만	15	90%이상 95%미만	2.5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실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점수	70	상위 5%미만	66.5	5%이상 10%미만	63	10%이상 15%미만	59.5	15%이상 20%미만	56	20%이상 25%미만	52.5
점수	35	50%이상 55%미만	31.5	60%이상 65%미만	28	70%이상 75%미만	24.5	80%이상 85%미만	21	90%이상 95%미만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실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성비	점수
점수	30	상위 5%미만	28.5	5%이상 10%미만	27	10%이상 15%미만	25.5	15%이상 20%미만	24	20%이상 25%미만	22.5
점수	15	50%이상 55%미만	13.5	60%이상 65%미만	12	70%이상 75%미만	10.5	80%이상 85%미만	9	90%이상 95%미만	1.5

□ 가계소득(10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성적(100점)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수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비	점수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국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3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임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폐색인정 ^{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 실종 증빙 서류 ^{주2)} + 주민등록표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주민등록표초본 ^{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폐색인정 ^{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폐색인정 ^{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폐색인정 ^{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주민등록표초본 ^{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폐색인정 ^{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기혼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 실종 등 서류 ^{주2)} + 주민등록표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폐색인정 ^{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8)}	

-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후조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수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을 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주5) 폐색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색'이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기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부'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 ^{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급대상자	장애연급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주2) 별첨5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이혼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동복)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부모 양쪽이 이혼후관계단절된 경우 형제·자매 수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
재혼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부), 계부(계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계모(계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형제·자매의 사망, 말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학자금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폐쇄 등록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단,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 ※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	-------------	-------	--------	---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